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어린이놀이기구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기구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정하는 등 내용으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695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동절기 안전검사시 물이용 놀이기구의 일부 검사항목 유보(안 제7조, 제8조)

물이용 놀이기구 안전검사시 물을 채워서 검사하는 항목(물순환시설)은 동파 발생 및 바닥 결빙 우려가 있어 검사를 최대 3개월 유보할 수 있도록 함

나.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검사 유효기간 산정기준 보완(안 제8조)

현행 규정의 검사유효기간(잔여일 1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유효기간 산정 기산일을 안전검사 합격일로 명확하게 규정

다. 어린이놀이시설 철거 시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어린이놀이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에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관리감독기관은 시스템에 변동사항을 반영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제한 항목 추가 규정(안 제11조의3)

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 흡연, 쓰레기투기 등을 추가하여 규정

마.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사항에 벌칙·과태료 결과 추가(안 제12조의2)

안전검사, 의무보험 등 시스템을 통한 보고사항에 벌칙·과태료 관련 항목 추가 규정

바. 중대한 사고 세부규정 중 출혈의 의미 명확화(안 제14조)

중대사고 세부 규정 중 의미가 모호한 ‘출혈이 심한 경우’를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명확하게 규정

사.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중대한 사고 보고 강화(안 제14조의2)

관리감독기관이 관리주체에게 통보받은 중대사고를 행정안전부에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보고 기간을 설정

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장소 확대(안 별표 2)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유아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놀이시설
법 적용 대상 장소로 추가하여 규정

자. 관리주체의 자료제출 항목에 안전사고 예방 관련 항목 추가(안 별표 8)

안전관리 의무사항 준수 등 관리주체가 관리독기관에 제출하는 자료에
안전사고 예방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차. 법제처 「과태료 금액 지침」 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 조정(안 별표 9)

개별법령간 동일 유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유사하도록 조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 제6항을 각각 제7항,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폭한, 폭설 등 기후적 요인으로 물이용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검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물순환시설에 대한 검사를 유보하고 설치검사의 합격판정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합격판정을 받은 관리주체는 3개월 이내에 물순환시설의 검사를 유보한 안전검사기관에 다시 설치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단,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 잔여일이 1개월 이상이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합격판정일)”로 하고, 제6항, 제7항을 각각 제8항,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폭한, 폭설 등 기후적 요인으로 물이용 어린이놀이기구의 정기시설검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물순환시설에 대한 검사를 유보하고 정기시설검사의 합격판정을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합격판정을 받은 관리주체는 3개

월 이내에 물순환시설의 검사를 유보한 안전검사기관에 다시 정기시설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어린이놀이기구의 철거)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 경우 7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은 제1조에 따른 철거상태를 확인한 후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시스템에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행위제한 등) 법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흡연·음주 행위
2.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불법 주·정차 행위
5. 반려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6. 그 밖에 해당 어린이놀이기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

제12조의2제2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8조, 제29조에 따른 벌칙과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결과
제14조제1항제5호 중 “출혈이 심한 경우”를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로 출혈이 심한 경우”로 한다.

제14조의2에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중대한 사고를
7일 이내에 어린이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문서로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별표 2에 제21호,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2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별표 8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 실태 현황

별표 9 제2호가목의 과태료 부과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50	350	500
-----	-----	-----

별표 9 제2호나목(종전의 다목)의 과태료 부과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50	350	500
-----	-----	-----

별표 9 제2호다목(종전의 라목)의 과태료 부과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50	350	500
-----	-----	-----

별표 9 제2호라목(종전의 바목)의 과태료 부과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50	350	500
-----	-----	-----

별표 9 제2호마목(종전의 아목)의 과태료 부과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50	350	500
-----	-----	-----

별표 9 제2호바목(종전의 자목)의 과태료 부과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50	350	500
-----	-----	-----

별표 9 제2호사목(종전의 나목)의 과태료 부과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50	200	300
-----	-----	-----

별표 9 제2호아목(종전의 마목)의 과태료 부과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50	200	300
-----	-----	-----

별표 9 제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제17조의3 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50	200	300
---	-----	-----	-----

별표 9 제2호차목(종전의 사목)의 과태료 부과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50	200	300
-----	-----	-----

별표 9 제2호카목(종전의 차목)의 과태료 부과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0	150	200
-----	-----	-----

에 제14조제1항제5호 중 “출혈이 심한 경우”를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로 출혈이 심한 경우”로 한다.

③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면책 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77조 제4항 제7조 제5항,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면책 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77조 제4항에 따른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아니할 때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8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법 제76조의4 및 제83조의6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무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설치검사 등) ① ~ ④ (생략) <신설> <신설> ⑤ (생략)	제7조(설치검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혹한, 폭설 등 기후적 요인으로 물이용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검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물순환시설에 대한 검사를 유보하고 설치검사의 합격판정을 할 수 있다.</u> ⑥ <u>제5항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의 합격판정을 받은 관리주체는 3개월 이내에 물순환시설의 검사를 유보한 안전검사기관에 다시 설치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u>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8조(정기시설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략)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 만료	제8조(정기시설검사 등)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 만료

일의 다음날

② ~ ⑤ (생략)

<신설>

<신설>

⑥ (생략)

⑦ (생략)

<신설>

일의 다음날(단, 직전 정기시설
검사의 유효기간 잔여일이 1개
월 이상이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합격판정일)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혹한, 폭설 등 기후적 요인으
로 물이용 어린이놀이기구의 정
기시설검사가 불가능할 경우에
는 물순환시설에 대한 검사를
유보하고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을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
설의 합격판정을 받은 관리주체
는 3개월 이내에 물순환시설의
검사를 유보한 안전검사기관에
다시 정기시설검사를 요청하여
야 한다.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제8조의3(어린이놀이시설의 철거)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 경
우 7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은 제1조에 따
른 철거상태를 확인한 후 어린

<신 설>

제12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의
2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의3(행위제한 등) 법 제17조
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말한다
1. 흡연·음주 행위
2.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
위
3.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
감을 주는 행위
4.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불법 주·정차 행위
5. 반려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6. 그 밖에 해당 어린이놀이시
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
제12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현행
과 같음)
② - - - - -

안전관리시스템(이하 “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통보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2. (생략) <신 설> 3.~6. (생략) 제14조(중대한 사고 등) ① 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4. (생략) 5. <u>출혈이 심한 경우</u> 6.~9. (생략) 제14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u>”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6. (생략)	----- ----- ----- -----. 1.~2. (현행과 같음) 3. <u>법 제28조, 제29조에 따른 벌칙과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결과</u> 4.~7. (현행 제3호~제6호와 같음) 제14조(중대한 사고 등) ① ----- ----- ----- ----- -----. 1.~4. (현행과 같음) 5. <u>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로 출혈이 심한 경우</u> 6.~9.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①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	--

<신 설>

[별표 2]

어린이놀이기구(제2조 관련)

1. ~ 20. (생략)

<신 설>

<신 설>

[별표 8]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사항(제15조제1항 관련)

제출 또는 보고자	제출 또는 보고사항
1. 설치자	(생략)
2. 관리주체	가. ~ 라.(생략) <신 설>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다.(생략)
2. 개별기준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4조제2

항에 따라 통보받은 중대한 사고
를 7일 이내에 어린이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문서로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별표 2]

어린이놀이기구(제2조 관련)

1. ~ 20. (현행과 같음)

21.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
른 유아교육진흥원

2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별표 8]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사항(제15조제1항 관련)

제출 또는 보고자	제출 또는 보고사항
1. 설치자	(현행과 같음)
2. 관리주체	가. ~ 라.(현행과 같음) 마. 어린이놀이기구 안 전사고 예방 및 유 지관리 실태 현황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다.(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1회	2회	3회
가.(생략)		<u>50</u>	<u>100</u>	<u>500</u>
나.(생략)		<u>50</u>	<u>100</u>	<u>500</u>
다.(생략)		<u>40</u>	<u>80</u>	<u>400</u>
라.(생략)		<u>40</u>	<u>80</u>	<u>400</u>
마.(생략)		<u>30</u>	<u>60</u>	<u>200</u>
바.(생략)		<u>50</u>	<u>100</u>	<u>500</u>
사.(생략)		<u>30</u>	<u>60</u>	<u>200</u>
아.(생략)		<u>30</u>	<u>60</u>	<u>200</u>
자.(생략)		<u>30</u>	<u>60</u>	<u>200</u>
차.(생략)		<u>30</u>	<u>60</u>	<u>300</u>
카.(신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1회	2회	3회
가.(현행과 같음)		<u>250</u>	<u>350</u>	<u>500</u>
나.(다.와 같음)		<u>250</u>	<u>350</u>	<u>500</u>
다.(라.와 같음)		<u>250</u>	<u>350</u>	<u>500</u>
라.(바.와 같음)		<u>250</u>	<u>350</u>	<u>500</u>
마.(아.와 같음)		<u>250</u>	<u>350</u>	<u>500</u>
바.(자.와 같음)		<u>250</u>	<u>350</u>	<u>500</u>
사.(나.와 같음)		<u>150</u>	<u>200</u>	<u>300</u>
아.(마.와 같음)		<u>150</u>	<u>200</u>	<u>300</u>
자. 제17조의3 제 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u>150</u>	<u>200</u>	<u>300</u>
차.(사.와 같음)		<u>150</u>	<u>200</u>	<u>300</u>
카.(차.와 같음)		<u>100</u>	<u>150</u>	<u>200</u>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연 락 처	(044) 205 - 4212